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0항 및 제3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8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제83조제2항 중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

2.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제8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30일 이내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제183조제1항 중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혼합자산·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으로 한다.

제229조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 제3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를 “조와 제23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호까지의”를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권비상장법인, 그 밖에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이하 “주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 증권(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한다) 취득, 금전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정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제2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4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또는 설립할 것
2. 최소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할 것. 다만,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각각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발행(이미 설정 또는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설정 또는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할 것

4. 모집가액이 5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소 모집가액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12조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제229조제6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합투자재산 중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제229조제6호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행위

3. 동일한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4. 집합투자재산 중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4호에 따른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와 제229조제6호에 따라 인정되는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

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설립 및 신주발행,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4조 중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를 각각 제19호의3부터 제19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23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별표 1에 제2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1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34조의3을 위반한 경

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p>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u>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② -----</p> <p>-</p> <p>-----</p> <p>----- <u>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u></p>
<u><신 설></u>	<p>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p>
<u><신 설></u>	<p>2.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p>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p>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30일 이내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u></p>
<u><신 설></u>	<p><u>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u></p>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부동산·특별자산· <u>혼합자산</u> 및 <u>단기금융</u> 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 ----- ----- ----- ----- (----- <u>혼합자산·단기금융</u> 및 <u>기업성장</u> -----) --- -----.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 ----- -----.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	1. ----- -- ----- -----

현 행	개 정 안
1호부터 <u>제3호까지의</u>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p>-----</p> <p>----- <u>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u></p> <p>-----</p> <p>-----</p>
5. (생 략) <u><신 설></u>	<p>5. (현행과 같음)</p> <p>6. <u>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권비상장법인, 그 밖에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이하 “주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권(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한다) 취득, 금전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정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② (생 략)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할 것. 다만,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3.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 가 운용하는 각각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발행(이미 설정 또는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설정 또는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할 것</p>
	<p>4. 모집가액이 5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소 모집가액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p>
	<p>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p>

현 행	개 정 안
	<p>려는 자가 제12조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제229조제6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1년 이</p>

현 행	개 정 안
	<p><u>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2. 집합투자재산 중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제229조제6호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행위</u></p>
	<p><u>3. 동일한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u></p>
	<p><u>4. 집합투자재산 중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u></p>
	<p><u>5. 제4호에 따른 안정적인 자산에</u></p>

현 행	개 정 안
	<p><u>대한 투자와 제229조제6호에</u> <u>따라 인정되는 주된 투자대상기</u> <u>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나머</u> <u>지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투</u> <u>자하는 행위</u></p> <p><u>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u> <u>추가설정·설립 및 신주발행, 기업</u> <u>성장집합투자업 인가, 집합투자재</u> <u>산의 운용방법, 집합투자증권의</u> <u>상장 및 상장폐지, 그 밖에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제444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제444조(별칙) ----- ----- ----- -----.</p> <p>1. ~ 19. (현행과 같음)</p>
<신 설>	<p><u>19의2. 제234조의3제4항을 위반</u> <u>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u> <u>자</u></p>
<u>19의2. ~ 19의4. (생 략)</u>	<p><u>19의3. ~ 19의5. (현행 19의2부</u> <u>터 19의4까지와 같음)</u></p>
20. ~ 29. (생 략)	20. ~ 29. (현행과 같음)

